관계부처 합동	보도참고자료	(배포) 2018. 4. 9.(월)
18:0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담 당	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	과장 신정훈, 사무관 고성민 (044-203-5770, 5776)
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과장 김용재, 사무관 정현호 (044-200-2379, 2380)
	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	과장 김현선, 사무관 김현진 (043-719-2170, 2158)
	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과장 최용석, 사무관 구본찬 (044-200-5610, 5618)
	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	과장 정혜련, 사무관 민동명 (044-201-2271, 2276)
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	과장 천성환, 서기관 김상욱 (02-2100-7675, 7678)
	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	과장 김성길, 사무관 김 상 (02-397-7351, 7357)

정부, 세계무역기구(WTO) 한-일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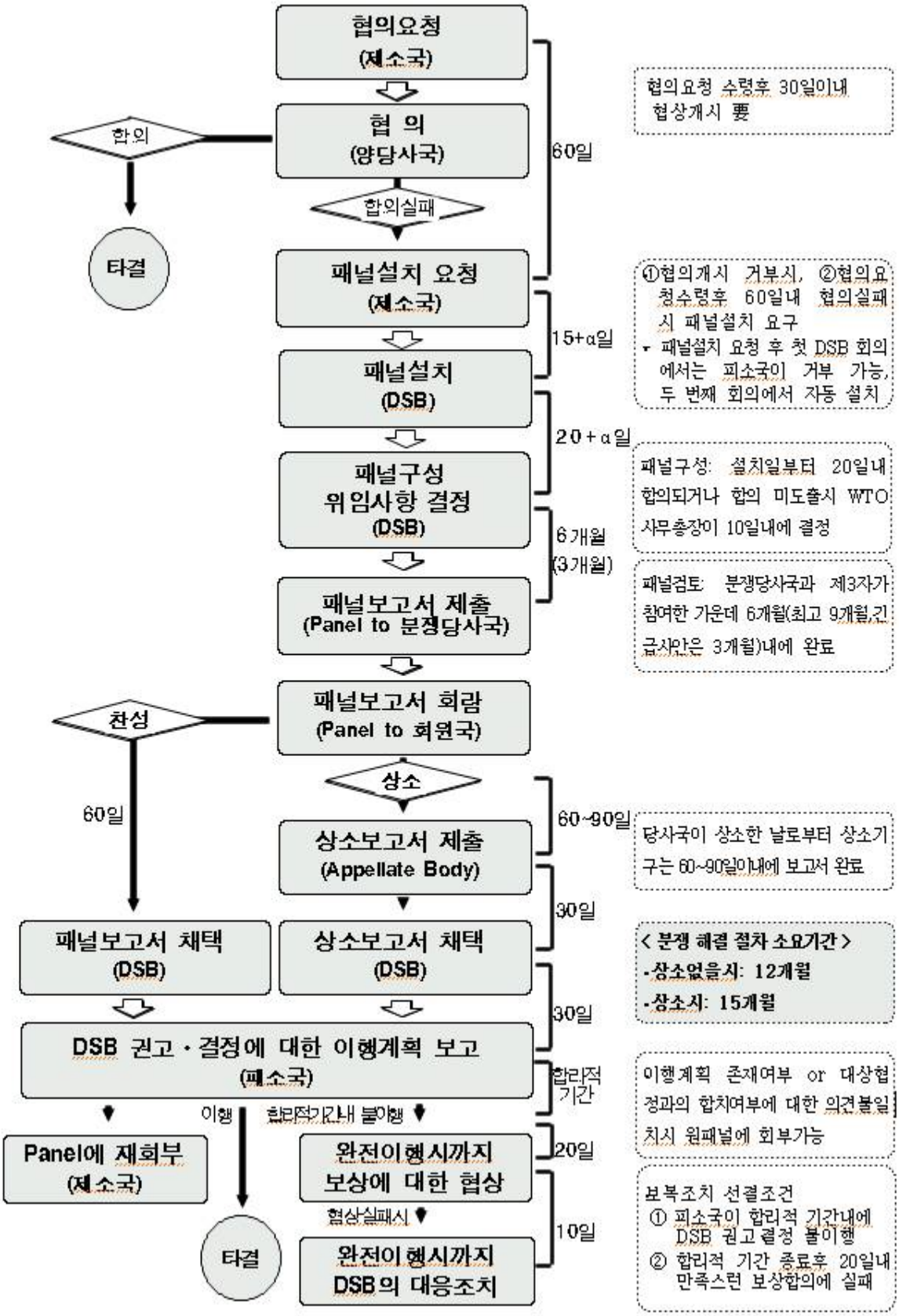
□ 지난 2. 22. 공개한 세계무역기구(WTO) 한-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,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.(4.9. 제네바 시간)

○ 패널은 '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(SPS)협정에 불합치 된다.'라고 판정했었다.

○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,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,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, 이에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다.

□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어야 하나, 최근 세계무역기구(WTO)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.

붙임 1 **WTO 분쟁절차도**



붙임 2 **패널(1심) 판정 결과**

□ 분쟁 대상 및 일본 제소 내용

○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*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**WTO 위생 및 식품위생(SPS) 협정 위반**임을 **주장**

* 전복, 알라스카 명태, 날개·눈·참·가·황다랑어, 금눈돔, 멸치, 청새리상어, 악상어, 첨연어, 멍게, 방어, 살오징어, 전갱이, 정어리, 대구, 참굴, 꽁치, 가리비, 망치고등어, 고등어, 청·황새치, 밤나무·참·대문어

○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(제2.3조) ② 무역제한성(제5.6조) ③ 투명성(제7조 및 부속서2) ④ 검사절차(제8조 및 부속서3) 조항에 위반이라고 제소

□ 패널의 판정 요지

쟁점	관련 규정	판정내용	WTO협정 합치여부
차별성	SPS협정 제2.3조	▪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,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	불합치
무역 제한성	SPS협정 제5.6조	▪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,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	불합치
투명성	SPS협정 제7조·부속서2	▪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,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,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	불합치
검사 절차	SPS협정 제8조·부속서3	▪ 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,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	합치